



『 10-22호 주간 심층이슈 』

- 중국 저작권시장진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증대
 - 한류저작권 위상상승 및 한류저작권 침해사례 증가하고 있음.
 - 문화상품수입규제관리 및 저작권무역의 관리강화, 한류TV드라마에 대한 제재, 한국온라인게임에 대한 제재 등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로 정식 저작권 수출이 어려움.
 -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작권침해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들이 도입되고 있어 구제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구제조치 시스템 필요
 - 중국저작권 보호환경의 새로운 변화(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로 인해 중국 내에서 저작권관리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함. 즉 이 시기를 중국내 한류기업진출 저작권 관리시스템 마련의 최적시기로 활용하여야함.

- 미국의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및 분석
 - 미국은 2005년 중국에 대한 섬유수출규제 및 시장경제국가인정 등을 빌미로 중미상업무역연합위원회의 지적재산권무역협상에서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통상의 최우선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 관련협회,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진전효과를 보고 있음.

- 이는 중국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보호에 있어 미국이 우선적인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2006년 2월 15일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인터넷저작권 침해단속 전문 활동” 보고서 중에 처리한 중대안건 중 판권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주요안건 중에서 대부분을 국제음반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 등 미국업체나 협회가 차지하였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행사에 참석한 중국정부 고위관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품추진계획 지지 및 해적품 추방 강조발언은 중국의 명확한 태도변화를 입증해 줌.
- 미국저작권산업의 주요 협회들은 중국 저작권관리 행정당국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내 불법저작권침해 단속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현재 국제음반업협회(IFPI), 미국영화협회(MPAA)와 미국상업소프트웨어연맹(BSA)이 초보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중국이 이들 미국 저작권보호협회들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저작권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또한 중국정부도 역시 처리결과에 대한 미국 관련협회의 반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저작권관리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전망

- 중국 저작권보호 관련 정부부문과 단체 및 기업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중국내에서 저작권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함.
-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는 2005년 12월 23일 「중국저작권법」과 「저작권집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판권국의 CD/DVD 등 음상제품저작권보호 집체관리단체로 정식 설립되었음. 이 협회는 향후 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등록 및 활동을 개시하게 되며, 2006년 상반기 내에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노래방, 웹사이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료 표준을 만든 후에 이 표준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어온 해당업소와의 저작권사용료 납부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음.

- 국가관권국은 현재 일부 개인 및 단체(외국인포함)들이 여러 개의 음반사들의 MTV 복제권, 방영권, 정보전송권 등을 위탁 받은 후 노래방경영자나 웹사이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저작권법」과 「저작권집체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국가관권국의 비준 없이 집체관리활동을 하는 위법활동이므로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강조 하였음.
-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존에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작권보호단속에 나서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작권관리업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하여 실질적인 저작권 관리업무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작권자단체와 정부가 지정한 집체관리단체, 사용자업체연맹들 사이에 권리분쟁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행정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집체관리’, ‘대리관리’, ‘합리적사용’, ‘업계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법적인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임.

□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추진 구상

- 기업입장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입장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조되어야함.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 불법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선 저작권기업 및 단체, 정부가 체계적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임. 기존에도 한국정부 또는 연구기관들이 중국에서 한국저

작권보호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여러 차례 진행된 적이 있으나 문제점지적 및 보호노력 강조에 그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음. 그러므로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플랫폼”이라는 구상을 통해 하나의 한중공동협조로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하는 체계화된 일정한 관리시스템 제시 및 그 단계적인 추진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함.

- 중국은 WTO개방이후 4년간 문화산업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개방 실험기를 거친 후에 해외수입저작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즉 해외저작권의 수입 시에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 분야별로 수입저작권 내용심의를 강화하고, 수입총량규제, 방영시간규제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외저작권을 중국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한류저작권의 중국내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저작권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려는 자가들이 한국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용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이 늘고 있고 부득이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이러한 중국의 한류저작권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중미지적재산권협상의 진전으로 중국의 저작권보호관리정책이 2006년 2월 15일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것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해외저작권단체들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이의 구체적인 노력들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음. 즉 작년에 영화 판권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해적판제품을 집중단속 등을 통해 중미양국간의 문화합작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국가판권국 연합으로 미국영화협회와 “중미 영화판권 보호협력 메커니즘”을 건립하는데 합의하였고, 북경에서 공동으로 “중미영화판권 보호협회 협력메커니즘 비

망록"을 체결하였음.

- 위와 같이 한류저작권의 중국내 정식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또한 한국도 저작권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 중국저작권관리행정당국 및 관련기구들의 도움이 필요함. 그러므로 한류저작권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 중국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한류저작권의 무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내에 한국저작권자와 정식 사용계약 없이 저작권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단속과 한류저작권의 중국 내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규정들을 위반한 불법제품에 대한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광전총국 등 중국행정당국의 단속간의 단속목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중간의 저작권무역활성화 방안추진에 있어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한류콘텐츠의 중국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국내 정식계약을 하여 사용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불법저작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무역규제 완화노력, 라이선시 발굴,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함.

□ 한중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 플랫폼 구성 기본개념

- 한류저작권의 중국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보호상의 문제점 및 한류저작권에 대한 무역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저작권시장관리의 특수성 고려, 중국저작권시장진출상의

공통적인 문제의 집중처리, 중국저작권시장 주요주체들과 연합하여 정품사용시장 확대유도, 한중 양국 공동추진방식, DB 연계, 정보 및 업무처리 등 상시적 관리시스템화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함.

- 플랫폼의 기본개념은 “한중간의 저작권보호 및 무역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의 상이한 저작권관리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행정관리기관 및 단체,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상호협조하에 한중공동으로 운영하는 양국언어로 지원되는 체계적인 저작권관리 서비스시스템”으로 정의함.
- 위와 같은 시스템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함.
- 그러나 이를 추진/운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극복해야 함. 즉 한중간의 문화산업무역격차 심화, 양국의 저작권행정관리체계의 차이, 중국의 중화사상 및 사회주의 정신문화 주창, 정부기관/지역보호주의 등 양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명확한 사업비전 확보를 위해 초기추진 역량이 필요하며,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중국시장에 적합한 저작권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모델구축(적절한 수익/분배모델 구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국 내 분산된 행정관리구조의 저 효율성을 극복하여야 함. 사업추진/운영전반에 걸쳐 양국문화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 이러한 추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구성하였을 경우 한류저작권 합법사용전환으로 인한 수출증대, 집단관리로 인한 규모의 경제달성 가능, 세계 최초의 종합저작권무역지원 플랫폼으로 확장가능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음.